

## 5.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최우수논문상 규정

제정 2007. 3. 22.

개정 2008. 3. 29.

대한예방치과.구강보건학회규정 제 5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회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, 우수논문을 발굴 홍보하며, 국내학술지 논문게재를 진작하고, 대한구강보건학회지(이하 '학회지')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최우수 논문을 선정하여, 최우수논문상(이하 '논문상')을 포상함에 관련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시기) 대한예방치과.구강보건학회(이하 '학회') 최우수 논문상은 특정 년도의 학회지 제1호부터 당해 연도 최종호까지 전문이 게재된 논문 중,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선정절차에 따라 한 개의 논문을 선정하여 익년도 초에 열리는 학회 정기총회 중 포상한다.

제3조(업무의 분담 및 추천공지)

- ① 논문상 후보 추천의 공지는 학회장과 학술이사가 공동으로 하며, 논문상 시상과 관련된 업무는 학회 학술이사가 담당한다.
- ② 학회 학술이사는 정기총회 개최일 1개월 전에 최우수논문상 추천자격자들에게 선정절차를 공지하고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4조(추천자격)

- ① 최우수논문상 추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아래 요건이 특정인에서 중복되더라도 당해인은 1인에 해당하는 추천권만을 갖는다.
  1. 전국 치과대학의 예방치학, 공중구강보건학 및 사회치의학 전공교수 중 학회 평생회원인 자
  2. 평이사를 제외한 학회 부회장, 감사 및 이사로서 학회 평생회원인 자
- ② 학회장 및 학술이사는 수상후보 추천과 관련된 정보를 집계하고 열람할 자격이 있으나 수상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.
- ③ 학회장 및 학술이사는 특정 추천자가 특정 논문을 추천한 내용에 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. 단, 집계결과 최종 추천인의 수와 익명의 논문의 추천회수 분포는 공개할 수 있다.

제5조(추천절차)

- ① 학회 편집이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학회지 게재논문의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호와 같은 배점기준에 따라 합산평균한 논문별 심사점수를 학술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1. 현 상태 게재가: 4점
  2. 일부수정 후 편집위원회 검토: 3점
  3. 일부수정 후 심사위원 검토: 2점
  4. 재심사 요망: 1점

5. 타 학회지 투고 추천: 0점

- ② 학회 학술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계된 논문별 심사점수에 의거하여 상위 18편을 예비 포상후보로 선정하고, 이들 예비 포상후보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자들에게 6편씩 추천해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에 있어, 추천자들은 추천자 본인이 속한 기관의 인물이 저자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은 추천할 수 없다.

제6조(수상작 선정)

- ① 최우수논문상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논문의 제1저자에 수여한다.
- ② 최다 추천 논문이 복수일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수상작을 정한다.
  - 1. 추천자 소속기관수가 많은 논문
  - 2. 제5조 제1항에 의한 합산평균 점수가 높은 논문
  - 3. 최우수논문상 추천에 참여한 추천자가 소속된 기관의 논문
  - 4. 전년도 기수상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논문

제7조(포상내용)

최우수논문상으로 선정된 논문의 제1저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기금의 운용을 포함한 학회의 예산상황에 따라 적정한 금액의 포상금을 수여한다.

<부 칙>

제1호. 이 규정의 '최우수 논문상'은 2005년 1월 26일 학회 이사회에서 결의되고 2005년 3월 부터 매년 수여되어 온 '올해의 논문상'의 명칭을 변경하며 계승하는 상이다.

제2호. 이 규정 제정 이전의 '올해의 논문상'은 '최우수논문상'과 동일한 상으로 본다.